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「자연공원법」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 기회 및 감경사항을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(폐문부재 등)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7. 11. 13.

인 제 군 수



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1. 공고기간 : 2017. 11. 13. ~ 2017. 11. 28.(15일간)
2. 송달내역

성명	주 소	위반일자	위반내용 (장소)	예정된 처분내용	비고
김*중	강원도 원주시 무실로130번길 **	2017.9.10	지정장소외 주차금지위반 (장수5교)	과태료50,000원 (자진납부시 40,000원)	
최*구	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**	2017.9.16	출입금지위반 (갈골)	과태료100,000원 (자진납부시 80,000원)	
변*준	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**	2017.9.17	출입금지위반 (안산)	과태료100,000원 (자진납부시 80,000원)	
오*상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길 **	2017.9.30	출입금지위반 (안산)	과태료100,000원 (자진납부시 80,000원)	

3. 문 의 : 강원도 인제군청 문화관광과(TEL:033-460-2085, FAX:033-460-2089)

4. 기 타

가.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(전자문서 포함)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

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
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나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
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